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

– 소규모 공연장 편 –

2021. 8

문화체육관광부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발 참여]	
프로젝트 기획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진실 연구원
자료 연구 및 분석	류정식 (Ghost LX 디렉터, USITT 공연안전보건 부의장)
[국내 자문]	
(사)한국소극장협회 서울문화재단 이음 (전주 공연장 운영) 대전 우금치극장 공연장매니저협회 극단바바서커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윤우 (사무국장) 정태환 (감독) 이재원 (대표) 성장순 (극장장) 김영신 (협회장) 이은진 (대표) 조성일 (교수)
[해외 자문]	
미국무대기술협회 USITT 예일연극대학원 Yale School of Drama 영국극장기술인협회 ABTT 영국리스크학회 ISRM 공연보건안전컨설턴트그룹 icrowd	Bryan Huneycut 의장 (공연안전보건위원회) Anna Glover 교수 (전 영국 Southbank Centre 안전보건 총괄 책임) Michael Anderson (의장, 공연안전보건위원회) Dr. David Rubens, DSyRM, CSyP, FSy Dr. Stuart Weiss, FACEP, FAAP, CBCP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본 매뉴얼의 목표는 공연장 내 공연 제작 및 공연장 운영 과정에서 감염병 위험 단계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저감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줄여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연장 환경을 구축하고 관객, 직원, 방문하는 공연단체와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에 있다.

▷ 본 매뉴얼에서는 공연장에서 감염병의 관리는 한 공연장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연장 등의 연계와 경험 공유 그리고 평시의 감염병에 관련된 일관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적용의 중요성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 공연장은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해당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적용할 수 있다. 감염병의 종류, 전파 장소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연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본 매뉴얼의 목적이며 2019년 발생한 COVID-19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공연장의 위험성 저감 활동과 환자 발생 시의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본 매뉴얼은 소공연장의 규모와 국내 소공연장의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며, 위험성 평가의 문서화와 내부 회의 간소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매뉴얼 제·개정 현황】

제·개정일 (승인일자)	주요내용	사 유	담당직원	협의기관
2021.6	매뉴얼 제정	-		

【매뉴얼 최신 주요 제·개정 내용】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직원별 임무와 역할	-	-
위험성 평가	-	-
대응 단계	-	-
별도 조치 등	-	-

CONTENTS

1 장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법

1.1 매뉴얼 개발 배경 및 목적 ····· 2
1.2 매뉴얼 작성, 갱신 및 열람 방식 ····· 3
1.3 매뉴얼 활용 방법 ····· 4
1.4 소공연장 방역 환경의 특성 ····· 5
1.5 소공연장 공간 특성: 3밀 환경 고위험의 저감 필요성 ····· 5
1.6 소공연장의 감염병 전파 및 저감 방식 ····· 8

2 장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2.1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체계 ····· 10
2.2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 및 실행 ····· 13
2.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 23
2.4 감염병 위기 저감 매트릭스 ····· 24

부록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1-1 법정 감염병 종류와 분류 ····· 31
1-2 국내 관계 법령 ····· 32
1-3 국제 보건 표준 ····· 32
1-4 관련 용어 정리 ····· 34
1-5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체계 및 전파 절차 ····· 37
1-6 위기경보 발령 체계 및 전파 절차 ····· 39
2-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41
2-2 수기명부 양식 ····· 43
2-3 수기명부 양식 안내서 ····· 45
3-1 공연장 순환근무공간 보건관련 체크리스트 (무대) ····· 47
3-2 소독증명서(소독필증) ····· 48
3-3 소독실시대장 양식 ····· 49
3-4 감염병 예방 개인보호장비 계획 ····· 50
3-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수칙 ····· 52
3-6 코로나19 심폐소생술 권고안 지침 ····· 53

제 1 장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법

1.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법

1.1 매뉴얼 개발 배경 및 목적

1.1.1 (매뉴얼의 목적) 이 매뉴얼은 방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방역 조치를 공연장 상황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1.2 (소통과 문서화의 중요성) 공연장은 대관 단체, 관람객, 공연장을 운영하는 인원 등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서 감염병 관리에 있어 감염병의 위험을 저감하는 직원 간의 소통과 이를 지원하는 문서로 작성된 가이드라인과 적용이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본 매뉴얼의 필요성이 있다.

1.1.3 (내부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보호 노력과 지역 커뮤니티의 보호 노력) 감염병 위험은 도시 혹은 국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은 관련 직원, 공연단체, 관객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공연장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감염병 추적과 예방 노력에 협조함에 있어 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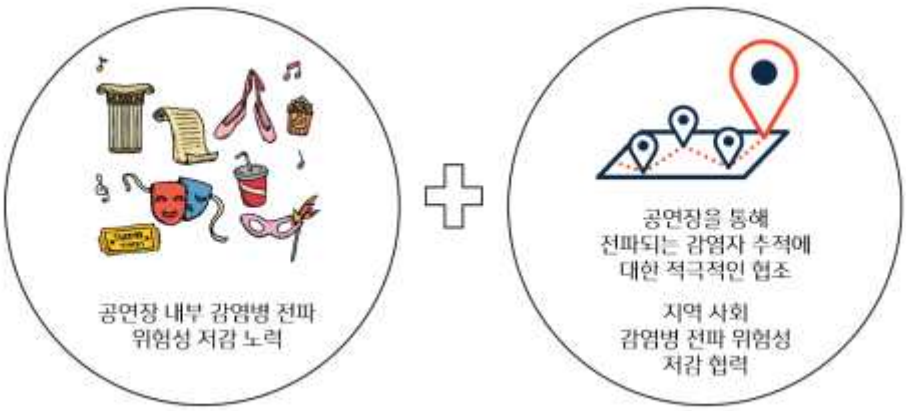

[그림 1] 공연장 내 예방 노력과 외부 전파 억제를 위한 감염자 추적 협력

1.1.4 (공연예술 공동체로서 방역 노력의 필요성)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방역 노력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연장 내 적극적인 방역 대응 시나리오 및 위험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연예술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외부로는 국민으로부터 공연예술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신뢰성

을 얻어 지속적인 공연운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1.2 매뉴얼 작성, 갱신 및 열람방식

1.2.1 (매뉴얼의 작성) 소공연장은 운영자가 여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뉴얼을 활용하여 공연장에 맞는 방역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1.2.2 (매뉴얼의 갱신) 운영 조직의 변화나 공연장 용도의 변경, 특정 감염병의 적용 사례들이 추가 및 일부 정보가 갱신되었을 때는 매뉴얼의 갱신이 필요하며 공연장에 적용되는 방역 당국의 정책과 조치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한다.

1.2.3 (매뉴얼의 열람 및 게재 방식) 본 매뉴얼은 공연을 제작하고 공연장을 운영하는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 문서로서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

□ (열람 가능한 온라인 문서로 운영) 온라인 QR코드를 제공하는 무료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주요 공연장 위치에서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해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게시) 공연장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SNS에 게시하여, 대관 단체, 공연자, 관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장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서 투명하게 규정대로 운영된다는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매뉴얼 게재 방식의 예(안)

1.3 매뉴얼 활용 방법

1.3.1 (감염병에 대한 신뢰 가능한 정보 및 방역 방안 갱신) 본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 위해 신뢰 가능한 방역 정보들을 갱신하고 본 매뉴얼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www.kdca.go.kr)
- 대한감염협회 (www.ksid.or.kr)

1.3.2 (공연장 내 현장 확인 및 제작 환경 분석) 본 매뉴얼의 핵심은 공연장 내 노출되어있는 감염병 위험성 평가와 공연장 운영진과 방문하는 공연 스태프의 자발적인 위험성 저감 노력에 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해 관객 관리, 무대 직원 및 공연장 경영 담당자들은 평시의 공연장의 공간 사용과 공연 제작 현장을 확인하여 감염병 전파에 관련된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저감 하는 방안을 토론 및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적용하여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다.

1.3.3 (훈련 및 아카이브로 활용) 본 매뉴얼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연장의 직원들의 방역 훈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연장 방역 조치에 대한 아카이브로 활용하여 일관성과 투명성을 갖춘 방역 체계를 문서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

1.3.4 (소공연장 버전 개발 배경) 소공연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보는 조직의 특성이나 공연장의 규모, 영세성, 공조 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이 분리되어 개발되었다. 공조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환기를 통한 감염병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장마다 다를 수 있는 조직 특성과 공연장 건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 내용을 갱신할 수 있다.

1.3.5 본 매뉴얼은 객석 수 300석 미만[1] 소규모 공연장에 적용할 수 있다.

[1] 300~1,000석 규모의 중공연장을 공연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일반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1.4 소공연장 방역환경의 특성

□ (소공연장 방역환경의 특성) 소공연장은 상대적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인력과 방역물품의 부족, 다른 소공연장과의 노하우 공유 등이 제한적이다.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공조 시설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연장 환기, 인근 공연장과 연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소공연장과 중/대공연장의 방역환경 및 능력 분석

주요 방역 요소	소공연장 (300석 미만)	중/대공연장
방역물품 조달 및 관련 시설 운영 능력	일반 건물 임차방식의 경우가 많음 공연장 감염병 전파 저감에 중요한 공조시설이 없어, 공연장 실내 환기에 대한 체계적 적용이 필요	보유한 공조 시설을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공간 관련 감염병 위험 저감 능력	공연 제작/객석 밀집도 높음 천장이 낮아 관객당 공기밀도 높음 상대적으로 저밀도 방침 적용 한계	공연제작 및 관람공간의 저밀도 처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근 공연장과 네트워크 구성	안전관리자 선임 어려움 수평/수직소통보다 제한된 시간의 효과적인 소통 필요	안전관리자 선임의 여유 안전보건회의 구성 가능 방역지침 전달 수월 수직적/수평적 소통 여유
내부 방역 관련 훈련 역량	1인 다역의 직원 업무 체계로 방역 임무 추가가 어려움 온라인 교육을 통한 방역 기본 교육 적용 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숍 모두 적용 가능

1.5 소공연장 공간 특성: 3밀 환경 고위험의 저감 필요성

1.5.1 (제작 관련) 공연장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연장의 공간(무대, 객석, 이동 경로 등)과 시간(제작, 리허설, 공연 및 미 대관상황) 등을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공연장 관리자는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여 공연장의 전파 감염병 위험성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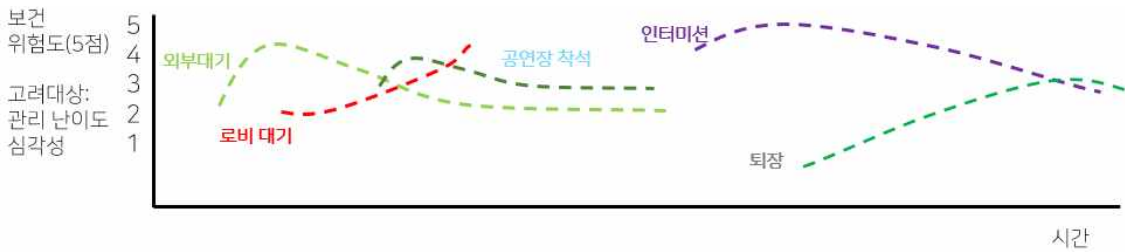

[그림 3] 공연 시작과 공연종료에 따른 관객의 감염병 위험성 다이어그램 예시

1.5.2 (공간) 소공연장의 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소공연장의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객석) 일부 공연장은 친밀한 관람 환경의 구성에서 벤치(Bench)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벤치좌석으로 좌석 구분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가 느슨할 수 있어 띄어앉기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 (객석 천장) 일부 소공연장은 천정의 높이가 낮아 공조 시설이 있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데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공연장 환경에 따라 공조시설보다 지속적인 환기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더 중요할 수 있다. 공조시설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 지속적인 환기가 핵심이다.
- (관객지원 공간) 관객 입장 시, 관객의 체온 및 관객 티켓 확인 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있으며, 관객 밀도가 높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 근무하는 공연장의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스태프 업무별 적절한 개인보호장치(PPE)를 사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분장실) 배우 대기실 혹은 분장실의 경우, 배우의 분장 및 배우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 질 수 있다. 분장실이 공조시설의 지원이 없고 창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리스크에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분장 데스크 및 개인물품의 소독 주기를 짧게 하며, 가능하다면 분장실의 밀집도를 줄이거나 사용 시간을 분할하여 장시간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작 스태프 공간) 소공연장을 대관하는 제작 스태프는, 중대 공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 공간이 좁을 수 있어, 소공연장의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제작 스태프의 충분한 휴식 공간을 별도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기는 분장실 사례와 같이 중요하다.
- (관객 이동 경로) 소공연장은 일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극장의 출입로가 1개이거나 출입 복도 폭이 좁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경에서 착석하여 관람하는 것보다 관객 이동에 의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좌석구간(Zoning)을 적용하여 관객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과 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표 7] 공연장 공간과 제작 시간에 따른 리스크 변수

공간	시간(제작)	장소를 기준하여 제작시간에 따른 리스크 변수
공연자 / 무대 분장실	드라이 / 테크니컬 리허설 공연 공연자 휴식 및 식사	- 대관단체의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 관리 지침 교육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준수 수준 - 분장실 당 공연자 밀집도 및 개인물품 소독 주기 - 분장실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준수 정도 - 분장실 등의 지원 공간의 주기적 환기 준수 정도
스태프 제작 / 반입 무대 조정실	반입 설치 리허설 공연 반출	- 셋업 기간의 조명/영상/음향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시간 분산 정도 - 작업의 분산을 위해 연장되는 대관 시간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스태프들의 휴식 및 식사 시간의 분산 - 설치/리허설 시 스태프 흡연/휴식/식사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 - 무대 내 공기 순환 정도와 공조 소음 허용 정도
관객 지원 / 로비 객석	주차/대중교통 진입 (Arrival) 대기공간 객석 인터미션 해산	- 무대와 관객 동선 분리 문제 - 건물 사용 인원과 관객과의 분리 문제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티켓 매표공간 고밀도 공간 노출 - 기념품, 식음료(MD/F&B) 등 간접 접촉 가능성 - 인터미션 등 관객 간의 대화를 통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 - 객석의 환기 문제 - 공연 이후 공간 체류로 인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

1.5.3 (시간) 제작, 공연 등의 시간에 따라 위험 요소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소공연장의 시간적인 특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관람 시간) 관객이 착석하여 관람하는 시간보다 공연장 내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객이 관람 전후의 공간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어느 공간에서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반입, 반출, 설치 시간) 반입, 반출, 설치 등의 과정은 산업보건적으로 볼 때으로 관람이 아닌 건설/제작(production)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룹별 입장 등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관리면에서도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 (리허설 시간) 전파사례들이 참여단체의 연습과정과 연습시간에 연계되어 있다. 지속으로 환기나 공조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3밀(밀접, 밀집, 밀폐)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연습공간과 관련하여 예술단체의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대관 시간) 단체들은 리허설 및 제작을 위해 전일(8시간) 혹은 반일(4시간)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공연보다 제작과정이 시간적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간에 관련하여 보건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페이스 쉴드 등)를 기본으로, 다양한 위험성 계층 제어 방식(2.2.4. 참조)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휴식, 식사 시간) 거리두기를 인식하기 어려운 식사 혹은 휴식 시간에 전파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리허설을 실행하기 이전에 밀접, 밀집, 밀폐 위험성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소공연장의 감염병 전파방식에 따른 위험성 저감 적용 방법

구분	관련 영역	적용 방법
 비말감염 **Droplet Infection**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飛沫)을 통한 전염 방식으로 감염자의 입과 코를 통해 배출된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2)]	• (환기) 리허설 공간이 일반 대중 출입 경로와 분리 가능한 경우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함 • (환기계획) 겨울철/여름 모두 적용, 공연 전/후 매시간 외부 창문과 문 개방 • (타이머 사용) 환기 송풍기 보유 시, 전력 타이머를 통해 리허설 이전 및 이후 환기 가동 • (마스크 착용) 목관악기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마스크 사용, KF지수는 호흡기 관련 개인 상태 적용 선택 • (보호장비) 필요 시 비말방지 스크린, 페이스 쉴드 적용 • (휴식/식사)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식사로 대체, 식사 관련 공간 지정,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식사 없이 진행, 리허설 이후의 모든 사교적 모임, 식사모임 금지 혹은 자제 요청
 접촉감염 **Contact Infection**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려서 침 등의 비말이 묻은 상태에서 악수나 피부 접촉 혹은 소품 사용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 리허설 과정 중의 배우 혹은 무용수의 피부 접촉 등으로 전염되는 경우	• (피부접촉) 배우 혹은 공연자끼리의 접촉이 있는 경우, 밀접 접촉자 분류 가능성이 높음. 리허설 장면별 세부 소독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 개념에서 공연자 보호를 위해 일부 연출에 대한 수정이 필요 • (공용물품) 비말이 묻은 손으로 손잡이 등을 잡은 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져 전염되는 위험성을 저감해야 함. 리허설 과정에서의 공연 소품 및 마이크 등이 해당 • (소품소독) 감염자의 비말이 묻을 수 있는 소품 및 관련 무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 • (개인물품 사용) 수건 등 접촉 가능한 물품에 대해 개인물품만 사용, 사물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후로 소독 필수 • (표면 소독) 리허설 공간, 유리문 및 출입 손잡이, 리허설 테이블 등 표면에 대한 소독 유효 시간별 소독 권장 • (담당자 지정) 소독을 위해 스태프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자(방역 책임자)를 별도 지정 (보건 지침)
 공기감염 **Airbone Infection**	비말보다 작은 공기 중에 떠도는 비말핵(droplet nuclei)에 의한 감염 기침이나 재채기 시 분출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 등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3)]	• (에어로졸)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5μm 이하의 에어로졸(Aerosol, 연무질) 형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기도 하는데, 이때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 • (비말핵) 에어로졸 형태로 분출된 미세한 입자는 수분이 증발되면 비말핵(Droplet nuclei)이 되어 폐포까지 침투 • (적정거리) 공기감염을 비말핵감염이라고도 하며, 비말핵 이동거리는 약 2m에서 48m 이상으로 공기감염은 비말감염보다 전염성이 높음. 공기감염 방식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상승하는 경우 사실상 리허설 진행 불가

2) 대표적 감염방식으로 COVID-19, 결핵, 유행성 감기, 폐렴 등이 비말감염의 방식으로 전파됨

3) 대표적 공기감염질환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형인플루엔자(H1N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있음

제 2 장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2.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2.1 공연장 감염병 대응체계

2.1.1 국내 공연장 내 감염병 관련 대응을 위한 주요 방향

□ (주요 방역 요소) 본 매뉴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보건규칙(IHR)이 소공연장까지 전달되어 공연장 내부와 외부로의 감염병 전파 피해를 줄이고 빠른 공연장의 일상 회복을 계획하는 데 있다. 특별히 소공연장이 공연장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면서 핵심적으로 **위험성 평가, 방역물품 및 실행 그리고 공연장 직원 간의 소통**을 강조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연장의 방역 실행과 관련 물품/시설의 조달	단계별 적용되는 공연장 기본 보건 위험평가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 간 소통의 자리 마련	소공연장 직원의 단계별 온라인 보건 훈련 참여

2.1.2 공연장 내 감염병 관련 대응을 위한 소통 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 WHO 국제 감염병 관리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명령, 통제, 커뮤니케이션**을 C3(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도 공연장 직원, 제작 단체, 관객관리에서 3C의 원칙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매뉴얼의 2장에서는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별 공연장 행동 요령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 관련 보건 서식 및 COVID-19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림 3]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3C 원칙을 적용한 공연장 감염병 예방 3C 원칙

□ (소공연장의 안전보건회의 운영) 소공연장의 경우 중대형 공연장과 달리 직원 스스로 보건과 방역에 대한 리더쉽 혹은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공연장운영자, 무대기술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으며, 소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활용하여 안전보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공연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일부 축소할 수 있다.

-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최신 지침 확인
- 감염병에 대한 소공연장의 대응 방향 및 방침 논의[4)]
-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종로구) 및 보건센터의 감염병 갱신지침 확인
- 감염병 방역을 위한 비용/시간에 대한 정보 확인
- 공연장의 방역물자 확보량
- 방역물자의 지자체 혹은 문체부 지원사업 확인
- 기본적인 방역 관련 게시문 갱신에 대한 논의
- 위험성 평가 계획 및 갱신, 방역관리의 문서화 계획
- 감염병 관련 툴박스 미팅[5)] 운영
- 기타 단계별 결정 사항

[그림 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기존 회의를 활용한 안전보건회의 운영

4) (사)한국소극장협회 등을 통한 기존 소공연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5) 툴박스 미팅(Tool Box Meeting, TBM)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해당 근무일의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간단한 미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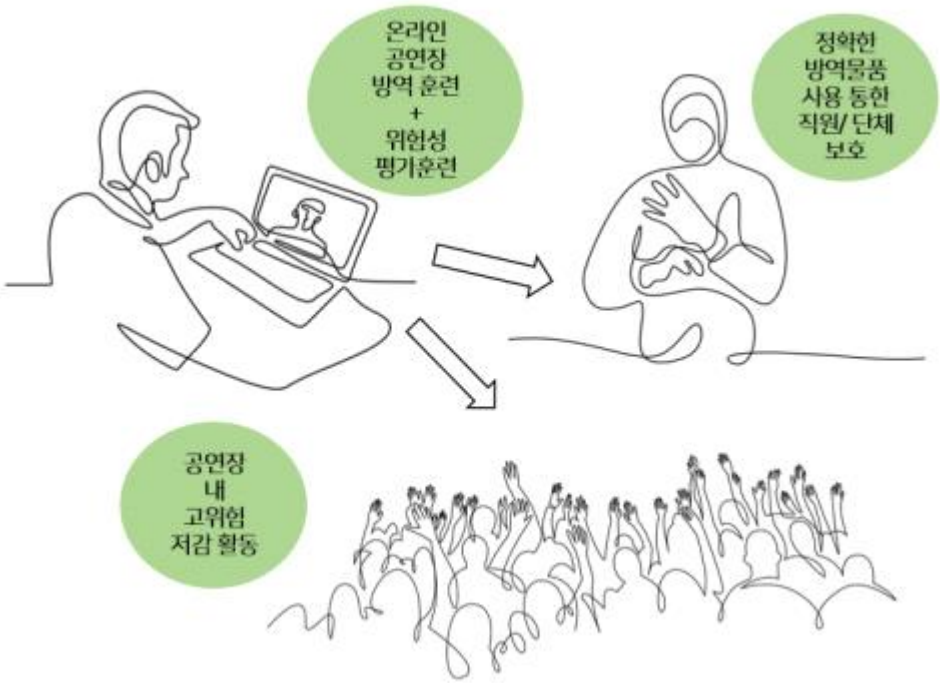

[그림 5] 온라인 훈련을 통한 위험성평가 적용 및 방역물품 사용 적용

2.2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 및 실행

2.2.1 감염병 확산 단계별 위험성 평가 적용

□ (위험성 평가 필요성) 본 매뉴얼은 감염병 전파 단계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기구의 군중관리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군중관리가이드에서는 단계마다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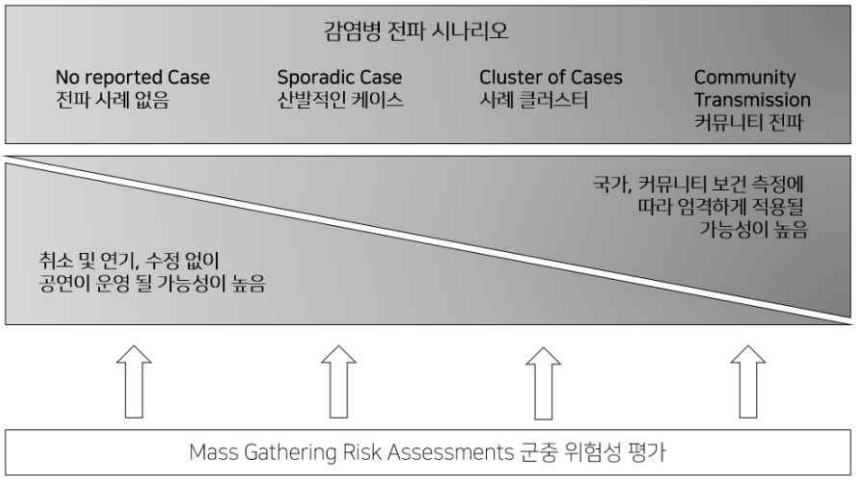

[그림 6] WHO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단계별 공연장 군중 위험성평가 적용

2.2.2 위험성 평가 계획

□ (단계별 설정) 위험성 평가에는 5가지 과정의 선순환을 통해 공연장 내의 지속적 저감 활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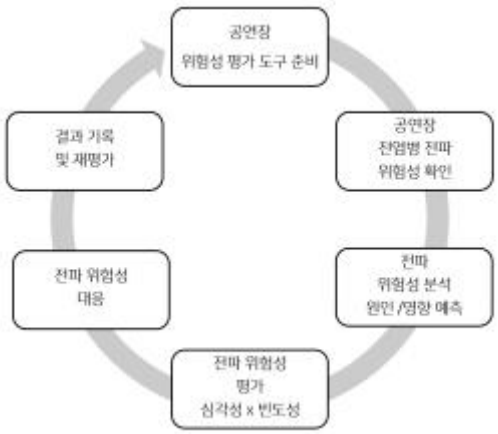

[그림 7] 감염병 위험성 평가 순환

□ (위험성 평가 참여 인원 계획) 위험성 평가의 참여는 시설, 관객 관리, 무대, 기획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 시설관리자가 함께 현장을 순찰하고 이를 목록화를 권장한다.

2.2.3 (위험성 평가 진행) 세부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일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타 공연장 직원들을 초청

하여 위험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 계획표 예시 (공연장 별로 업데이트 가능)	
평가 단계	관련 내용 (예시)
보건 위험성 평가도구 준비	공연장 운영 책임자나 관련 온라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실시. 전체 작성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공연장 운영 책임자가 최종 참여해야 함
위험성 확인 및 분석 (현장 참여)	공간을 이동하면서 노출된 위험성을 확인, 저감할 수 있도록 함. 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함
위험성 평가 동선의 예 (20분 소요)	극장 앞 공공공간 → 소극장과 동선이 겹치는 카페 →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 -> 극장 로비 및 매표/티켓 확인 구간 → 소극장 무대/객석 → 공연장 분장실 및 휴식공간 → 화장실 → 무대 조정실 → 사무공간 -> 안내직원 대기공간 → 기타 추가적인 시설
위험성 평가 (20~40분)	현장 위험성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문서 작성 및 심각성과 빈도성을 계산하여 위험성 처리 방안 논의
위험성 처리	방역 시설에 대한 임차/지원. 방역물품 확보의 관련, 지자체, 소극장 협회를 통한 지원 사업 확인 뒤 요청 픽토그램 및 관련 관리적인 처리의 경우, 기존의 픽토그램 인쇄물 템플레이트 확보, 인쇄
재평가	위험성 처리 후, 재평가, 문서화

□ (위험성 측정 항목) 소공연장 감염병 관련 위험성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1] 위험성 평가 문서 작성 시, 주요 측정 항목들 (공연장별 업데이트)

구 분	내 용
공연장 공간 위험성 평가 항목 지자체 지침 변동 시 해당 부분 갱신	• 공연장의 관람 방식 (스탠딩, 좌석) • 공연장 로비, 공연장, 사무실 전체 공조 환기 여부[6] • 공조 없는 경우, 에어컨 활용 방식 점검 (풍향 등) • 공연제작, 공연 시 환기 주기 • 무대/객석/로비 군중 밀도 • 대기동선 밀도 (티켓, 화장실) • 공연장 동선 분리 가능성 (관객동선 일방/쌍방 통행 여부) • 관람 입/출입 방법의 다양화 가능성 • 엘리베이터 등의 저밀집 가능성 • 사무공간의 밀도 및 환기 가능 여부, 식사방식 • 공연장 내 F&B(식음료) 허용 방침 • 감염자 추적 시설 여부 (QR, 수기방식) • 방역 관련 개인보호장비 보유 (소독제, 장갑 등)
공연장 직원 관련 훈련/일상 항목	• 해당 감염병 이해도 및 자체 방역물품 사용능력 • 근무자 교대 시 방역 상황 유지 역량 • 실내 방역 및 환기 주기 및 문서화 (횟수/월/일) • 관련 내부 직원들의 위생관리 훈련 여부 • 무대제작 프리랜서 및 파트너들의 보건 관리 협력 정도

구 분	내 용
대관단체 공연자/스태프 위험성 평가 항목	• 대관 기획사별 공연제작 운영 특성 (장기공연에 적용) • 일반 제작 스태프 인원 및 작업공간 밀도 • 스태프 휴식, 흡연 공간의 밀도 • 분장실 사용 밀도 • 외부 무대 제작 파트너 (조명/음향/무대 관련) 참여 여부 • 파트너별 방역책임자 선임 및 현장 참여 여부 • 참여 스태프, 배우 거주지역 • 대관 단체의 위생 물품 준비 여부 • 대관 단체 개별 방역 중요성 인지 여부(훈련+시간) • 대관 단체의 방역책임자 선임 및 3C 참여 정도
관람객 특성 공연 별 적용	• 예상되는 주요 관람객 거주지 • 주요 관람객의 연령, 건강 상태 • 해외 및 현지 여행 가능성 • 관람객 대기 시간 • 관람객 관람 시간 • 관람객 예상 퇴장 시간 • 관람객 관람 방식(스탠딩 방식, 고정좌석) • 티켓 구매 방식 (사전 예매) • 인터미션 유무 • 물품보관소 허용 • 음료 반입 허용 유무 • 배우 지인의 대기실 방문 허용 여부 • 출연자 선물 전달 혹은 만남 행사 공연자 • 관객과 배우(무대) 간의 간격
공연 외 프로그램 위험성 평가 항목 (전시/강연/워크샵)	• 관람객 밀집도 / 예약 제한 / 환기 공조 적용 계획 • 관람자 매표 대기 거리, 매표 방식 (현장 발권) • 관람자 동선 거리, 출입문 및 전시 시청각 시설 접촉 정도 • 머천다이즈(MD) 접촉 가능성 • 주요 프로그램 이전 이후 관람객 체류 가능성 • 강연자/전시와 관람객의 거리 및 비말 노출

□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아래와 같이 **중대성과 빈도성**을 참여자가 판단하여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정량화하여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단순히 이러한 정량화 된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량화 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직원 간에 소통하여 공연장의 감염병 위험성을 저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빈도성**은 해당 감염병의 소공연 및 중대공연장 그리고 유사시설(종교시설 및 강연)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 내에 감염병이 발생한 종교시설 혹은 2시간 이내의 실내행사나 인근 타 도시

6) 내부 공기/외부 공기 비율, 필터 교체 주기

공연 혹은 리허설 공간에서 유사 전파 사례들이 있는 경우 빈도수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 **중대성**은 관련한 감염병 전파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및 공연장 그리고 대관이 예약된 대관단체의 피해 정도를 예상하여 정할 수 있다. 중대성은 해당 공연장의 규모, 대관공연의 규모(장기/단기, 캐스트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뮤지컬의 경우 캐스트 및 스태프 규모가 100여 명 정도로 크고 대역 등이 있어 해당 인원의 자가격리와 선제적 검사를 통해 감염이 경미하고 감염자 추적이 복잡하지 않으면 1주일 안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연극의 경우, 2-3일 규모의 단기 공연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공연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어 중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연장이 도심지에 있거나, 대학로 혹은 복합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의 전파로 인해 전체 건물을 봉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의 감염병 위험성 확인/분석/평가의 매트릭스

RISK RATING KEY 12점 기준 위험성평가 매트릭스 합산 결과 일람 (색상의미)	LOW (낮음) 1~2 - ACCEPTABLE 감염병 관련 공연제작에 수용가능한 공연제작 환경 OK TO PROCEED 공연제작 진행	MEDIUM (중간) 3~6 -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저감 노력 필요 TAKE MITIGATION EFFORTS 내부적인 방역 조치로 저감 가능	HIGH (높음) 7~10 - GENERALLY UNACCEPTABLE 방역환경이 공연제작에 적절한 수준이 아님 SEEK SUPPORT 책임자 내부 해결 어려움 상급기관 지원요청	EXTREME (매우높음) 11~12 - INTOLERABLE 공연제작을 수용할 수 없는수준 PLACE EVENT ON HOLD 오프라인 공연제작 임시 정지 확은 폐쇄

	SEVERITY 중대성 예시			
	ACCEPTABLE (수용) LITTLE TO NO EFFECT ON EVENT 공연제작에 영향 적음	TOLERABLE (수용가능) EFFECTS ARE FELT, BUT NOT CRITICAL TO OUTCOME 발생할 경우 공연장 및 공연제작에 일부 타격이 있으나 회복가능	UNDESIRABLE(높음) SERIOUS IMPACT TO THE COURSE OF ACTION AND OUTCOME 공연제작 및 공연장에 심각한 데미지 적용, 공연장 연쇄적 일부공연취소 2주 이상의 업무 불가능	INTOLERABLE(치명) COULD RESULT IN DISASTER 지역의 심각 전파 매개체됨 해당 시즌 공연장 폐쇄 인근 공연장 연쇄 폐쇄 상부 기관의 감사 지시 공연단체 다수 공연자 감염으로 모든 제작 활동 중지
LIKELIHOOD 빈도성 예시				
IMPROBABLE 낮음 RISK IS UNLIKELY TO OCCUR 관련 된 기존 유사사례 없음	LOW - 1 -	MEDIUM - 4 -	MEDIUM - 6 -	HIGH - 10 -
POSSIBLE 가능성 있음 RISK WILL LIKELY OCCUR 관련된 유사사례가 있으며 전파 사례 발생 확률 있음	LOW - 2 -	MEDIUM - 5 -	HIGH - 8 -	EXTREME - 11 -
PROBABLE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RISK WILL OCCUR 유사 전파사례 많음 전파 확률 높음	MEDIUM - 3 -	HIGH - 7 -	HIGH - 9 -	EXTREME - 12 -

위험성 평가책도 (1~12점) = 중대성 (수용, 수용가능, 높음, 치명) X 빈도성 (낮음 가능성, 높음)
예시) 중대성 3점 X 빈도성 2점 = 위험성 평가 6점 으로 중간 단계 (회색)으로 적용

소공연장 전염병 위험성 평가 예시 RISK ASSEMENT METHOD(RAM)

프로젝트 이름 (Project Name)	소극장 예시				OBJECTIVE	팬데믹 지속에 따른 장기적인 스태프 및 관객의 보건 리스크 저감 / 운영 스케줄 유지				
위험등록 번호 REF/ID	위험 확인 (Risk Identify) 위험성 분석 (Risk Analysis)	위험성 평가 (Risk Evaluation)			관련 부서 및 장소 DEPARTMENT / LOCATION	리스크 저감 조치 (Response)	재평가 (POST-MITIGATION)			
	위험성 저감이 필요한 이슈들	심각성 RISK SEVERITY	빈도성 RISK LIKELIHOOD	위험성 수준 RISK LEVEL			심각성 RISK SEVERITY	빈도성 RISK LIKELIHOOD	위험성 수준 RISK LEVEL	수용 가능한 리스크인가? ACCEPTABLE TO PROCEED?
06-23/R01	**티켓 데스크 스태프 @ 로비/소극장 예술극장** 티켓 직원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 관객과 물리적인 분리 필요/데스크 사용 확인	해결대상 위험 UNDESIRABLE	발생빈도 높음 PROBABLE	HIGH	하우스 매니징팀 외부티켓관리직원	- 현장티켓 -> Will Call, 홈 프린트 티켓으로 전환 향후 고려 - 데스크 공간 좁음, 운영 인력을 4명에서 2명 조정 - 조정 된 2명은 그룹 콜 스태프로 활용 방안 고려 - 상부 비말 차단용 아크릴 스크린 설치 - KF-94 급 마스크 사용 (직원 착용시 호흡 문제 확인 필요)	수용가능한 위험 ACCEPT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06-25/R02	**관객 대기 공간 @ 로비/소극장 예술극장** 사회적 거리두기 바닥선 운영 (1m) 되나 전체 관객수에 비해 대기선이 적음, 대기열의 확장 필요 로비 수용력 낮음 (150 seat, 1m 기준) 로비 대기선 확장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진행 불가능한 위험 INTOLE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HIGH	하우스 매니징팀 외부티켓관리직원	- 관객 그룹별 적용, 공연장 외부에 대기 -> 여름, 호우시 쉐이드가 없어 운영영 제한 -> 물리적으로 임시 외부 쉐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산/가능성 확인 - 대공연장 로비 사용하여 Will call 적용 -> 동시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용 - 로비 외부공간의 대기열 확장 -> 주변 노숙마킹/냄새/소음 문제 -> 바이크형 바리케이트 사용 + 쉐이드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 장애인 덕자를 위한 Fast track 적용 필요 -> 매약자에게 알림 필요 - 전일 담당관객 소통을 위한 Push Message 운영 -> 전담 스태프 지정	수용가능한 위험 ACCEPT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06-25/R03	**화장실 @ 1층 로비 예술극장** 여자화장실 대기 라인 지점 필요 일부 대기라인과 전립 대기라인과 겹칠 수 있으나 1m 거리두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결대상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MEDIUM	하우스 매니징팀 외부티켓관리직원	- 여성 대기라인 아침 테이프 표기/보환 - 2층 로비 화장실 사용을 위한 안내문 표기를 통한 트래픽 저감 - 2층 화장실의 경우 5분이면 대기시간 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게시물 활용	해결대상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06-25/R04	**분장실 @ 지하 1층, 소공연장** 각분장실별 소독 염물 스테이션 확인 (60% 이상 에탄올) 손 씻기 > 소독제보다 효과적	진행가능 위험수준 TOLE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무대스태프 + 프로덕션	- 소독제 공급을 프로덕션이 제공 할 수 있도록 대관계약에 명시 - 소독제 성분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보유 - 관객의 소독은 공연장, BOH는 프로덕션 등으로 구분	수용가능한 위험 ACCEPT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06-25/R05	**물품보관소 @ 지하1층 로비 예술극장** 관객 접촉 및 비말 전파로 인한 스태프 전염 가능성	해결대상 위험 UNDESIRABLE	발생빈도 높음 PROBABLE	MEDIUM	하우스 매니징팀 외부티켓관리직원	- 물품 대기선 표기 필요, 물품 찾아가는 인원은 평균 10명으로 예상 -> 1m 기준 대기 라인 표기 필요, 대기자는 공연장에 남아 있도록 제안 - 비말 차단용 아크릴 스트린 설치 - 의료용 라텍스 장갑 사용 - 관객 퇴장시 마지막에 나와서 수령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 있음 - 꽃/음료수를 제한하고 가방이나 케이머만 수령 -> 관련한 관객 안내 비디오를 제작하여 예매 시 SMS Push message로 연결	진행가능 위험수준 TOLE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MEDIUM	YES

소공연장 감염병 위험성 평가 예시 RISK ASSEMENT METHOD(RAM)

프로젝트 이름 (Project Name)	소극장 예시				OBJECTIVE	[illegible] 리스크 저감 / 운영 스케줄 유지				
위험등록 번호	위험 확인 (Risk Identify) 위험성 분석 (Risk Analysis)	위험성 평가 (Risk Evaluation)			관련 부서 및 장소 DEPARTMENT / LOCATION	리스크 저감 조치 (Response)	재평가 (POST-MITIGATION)			
	위험성 개별적 발생한 이슈들	심각성 RISK SEVERITY	빈도율 RISK LIKELIHOOD	위험성 수준 RISK LEVEL			심각성 RISK SEVERITY	빈도율 RISK LIKELIHOOD	위험성 수준 RISK LEVEL	수용 가능한 리스크인가? ACCEPTABLE TO PROCEED?
[illegible]	[illegible]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MEDIUM	무대스태프 + 프로덕션	[illegible]	수용가능한 위험 ACCEPT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illegible]	[illegible]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UNDESIRABLE	발생빈도 높음 PROBABLE	HIGH	무대스태프 + 프로덕션	[illegible]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MEDIUM	YES
[illegible]	[illegible]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MEDIUM	무대스태프 + 프로덕션	[illegible] Push Message [illegible]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UNDESIRABLE	사고 발생가능 POSSIBLE	LOW	YES

□ 위험성 처리: 확인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해당 직원의 처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함으로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다. 위험성을 처리할 때는 1) 담당자, 2) 처리 이후 확인(누가, 어떻게)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가 재분석을 위한 근거가 된다. 감염병 관련 위험성 처리 방법에는 ISO 31000:2009에 의거 회피(Avoid), 감소(Reduce), 분배(Share), 유지(Retain)의 4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연장의 조직의 상황에 따라 위 4가지 방법 중 아래의 세부 조치 내용 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표 12] 공연장 보건 위험성 처리(Risk treatment) 주요 방법

번호	구 분	적용 방안 세부 내용 (공연장별 수정 및 추가)
1	 **위험 회피**	• **주요 클라이언트(관객, 대관단체) 관계 정립에 관련된 조치** • **감염병 전파 유발 요인 재배치에 관련 된 모든 조치 (직원 포함)** •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클라이언트) 재정비 • 공연장 대관 기준 수립/갱신, 문서화, 대관계약 재협의 (예술단체) •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대관 공연의 취소/연기/재배치 • 해당 기간의 한시적 원격근무제 도입 • 필요시 인터미션 및 로비 사용 회피 • 여러 공연장 운영 시 공연 시간 조정을 통한 관객 밀집 축소
2	 **위험 감소**	•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방안 마련, 위험성 분산을 위한 공연방식 및 대관방식 다각화**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객석 레이아웃 변경 • 일부 고위험공간 폐쇄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직원 사무공간 레이아웃 변경 • 전파에 따른 대응 훈련 및 훈련 매뉴얼 문서화 (본 매뉴얼 활용) • 감염병 예방, 방역장비 사용 교육 및 훈련 (직원별) • 무대/관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사회적 거리두기 픽토그램) • 공연장 관객 입장 경로(access) 다변화 • 공연장 방문자/관객/스태프 온라인 문진표 운영 • 직원 오프라인/온라인 근무 재분류 및 단계별 실행 • 비대면 근무, 최소인원 근무, 순환 근무제 • 사전예매 방식 고려[7)] • 모든 제작과정 공조시설 가동, 외부공기/실내공기 비율 조정 • 관객 혹은 직원보호용 비말 스크린 도입 • 관객 및 무대인력 비대면 온도 측정 시설 도입 • 사무실 환기 스케줄 지정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용 인원 제한 • 비말 확산에 관련된 에어콘 풍향 재조정 •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번호	구 분	적용 방안 세부 내용 (공연장별 수정 및 추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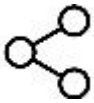 **위험 분배**	• **대관단체/공연자/관객과 위험을 분배하는 일련의 조치** • 대관단체와 방역 공동 관리를 위한 협의(방역구역/방역물품) • 분장실 밀도 분산으로 인한 추가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 (민간) • 공연장 취소 보험 가입 혹은 온라인 플랫폼 전환 • 상주단체 방역관리 공동부담 운영 (상주단체 연습실/사무실) • 입주시설 방역관리 공동부담 운영 및 카페와 동선 분리 • 관객 & 대관단체 : 인터미션 (MD/F&B 수익저하 부담) • 공연장에서 업무별 개인보호장비 지급 (장갑) • 임시보호실 지정으로 인한 일부 공간 손실 감안 • 공연 시 공조시설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대류 영향으로 인한 무대 흑막의 움직임에 대한 연출상의 사전 협의 (대관단체, 연출)
4	 **위험 감시**	• **일부 전파 위험을 허용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 • 방역물자 수요/공급 모니터링 • 무대/분장실/휴게실/흡연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 관객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 제작단체 소그룹별 툴박스 미팅 운영 • 체온측정 기록 및 외부인 방문 로그 운영 • 행사 진행 중 유증상 환자 발생시 '밀접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검사 조치

재평가: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모든 고위험을 저위험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재 위험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 위험성 처리가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 다양한 직원의 참여 혹은 외부인력이 참여한 재평가를 권장한다. 예를 들어 타 공연장의 기술감독, 하우스매니저, 경험 있는 외부인원을 초청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재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표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2.2.4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한 위험성 계층 제어 적용, Control of Hirachy): 관련 담당자들은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위험성 계층 제어를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계층 제어는 가장 높은 계층인 1단계 제거를 우선 활용하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2단계 혹은 아래 계층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2단계에서 5단계의 모든 아래 계층 조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감염병이나 질병의 경우 다른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대체'할 수 없어 2단계 계층은 생략된다.

7) 국내 사전예매 환경상, 전자사전예매의 전환이 어려우나, 최근 들어 가능한 방안 찾고 있음

[그림 8] 감염병 전파 저감을 위한 공연장 위험성 계층 제어
(안전보건 계층 제어에서 적용)

□ 3단계 공학적 제어는 환기, 공조시설의 사용, 칸막이 설치, 책상과 의자 배치방역을 위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예산에 대한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 보유한 방역 예산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한다.

□ 4단계 행정적 제어는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및 개인소독 에티켓, 청소 및 공연장 자체 소독이나 외주 전문소독업체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연장을 방문하는 관객 사전 안내, 공연자 교육 및 공연장 이동에 대한 지침 전달, 공연장 내부인원 및 관련 파트너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 9] 4단계 행정적 제어 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 (COVID-19)

□ 5단계 개인 보호 장비는 직원 개별로 준비하는 마스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연장 공간별, 업무별로 주어지는 방역을 위한 장갑 및 아크릴 스크린 같은 장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시 및 시청각 관람객의 경우 헤드폰이나 마이크에 덮개를 씌우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2.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2.3.1 국가 위기경보 단계와 소공연장의 위기관리의 연결

□ 본 매트릭스는 국가 위기경보 단계와 공연장의 파트별 대응을 연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예방단계에서 회복단계까지 위기단계에서 각 파트 및 공동의 노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위기단계별 소통과 책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2.4에 각 파트별 대응과 소통방식이 매트릭스 방식으로 요약되었다. 본 매트릭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기경보 단계별 전파 매트릭스의 모형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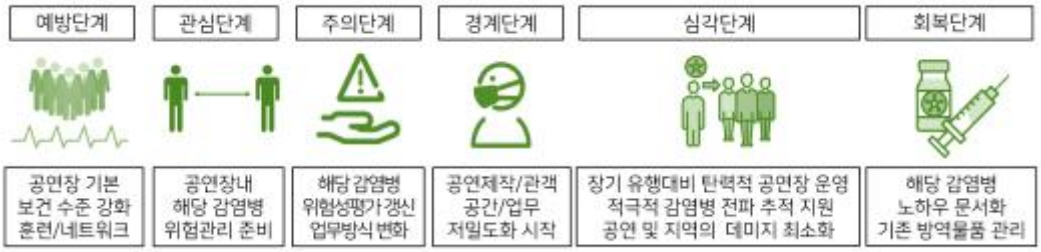

[그림 10] 국가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공연장 감염병 위기관리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예방 단계에서부터 공연장 간의 협력을 통해 공연장의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다.

- (COVID-19 사례를 통해 본 공연장 방역 시사점) 감염병 전파와 관리 사례를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업종 혹은 산업별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항 혹은 항공산업이 이러한 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방역 관리 방침을 공연산업 혹은 예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만일 단일 공연장이 모범적으로 방역을 진행하더라도 지역 내의 공연장과 방역 체계에서 연계되지 않으면 지역의 일부 공연장 혹은 리허설 공간에서의 발병으로 지역의 모든 공연장의 임시적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예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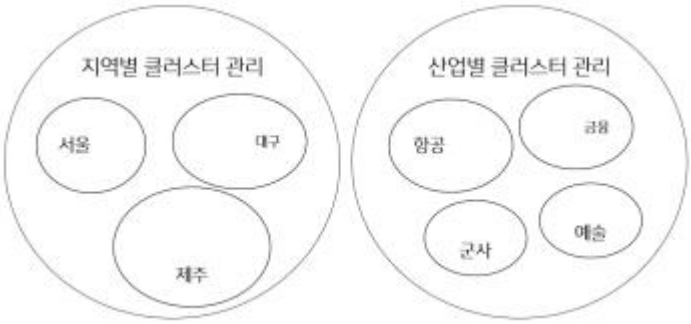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 혹은 산업별 감염별 대응 사례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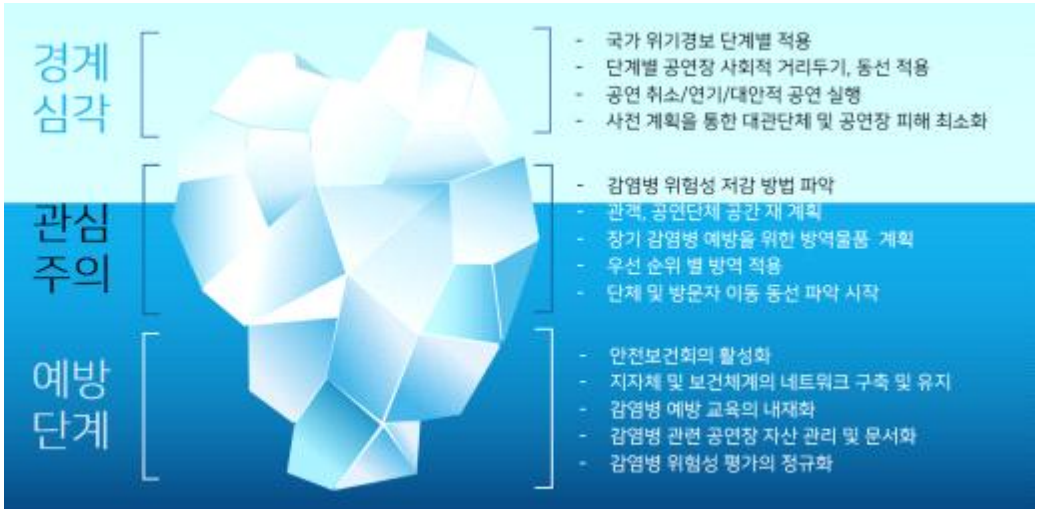

[그림 12] 빙하 모델로 보는 공연장 감염병 예방단계의 중요성

2.4 감염병 위기 저감 매트릭스

2.4.1 국가 위기경보 단계와 연계된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트릭스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예방 단계 위기 단계 해당 안됨	평시	 공연장 기본 보건 수준 강화 훈련 + 네트워크	(공통) - 보건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저감 조치 (권장) - 기존 공연장 방역 사례 중심 내부 워크샵 참여 (권장) - ISO 45100 국제안전보건기준 혹은 국제 공연장의 보건 및 제작환경에 맞는 정량화 및 보건 수준 개선 (권장) - 직원 간 보건 관련 수평소통 역량 강화 (권장) - 상주단체와 공동 보건 수평적 소통 역량 강화 (권장)
			(기획) - 감염병 대비 보건관리자 지정 (기존 보건 지침) - 지역 공연장 거점 자발적 방역 네트워크 구축 (권장) - 기존 공연장 방역 사례 중심 내부 워크샵 참여 (권장)
			(무대) - 감염병 및 전파사례 관련 직원훈련[8] (기존 보건 지침) - 분장실 등 공동공간에 대한 기본 보건 원칙 설정 (권장) - 공조시설 운전 소음/풍향/온도 영향평가 정량화 (권장) - 공조시설 소음 및 풍향 개선 사업 진행 (권장) - 비대면 공연지원용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권장) - 분장실 등 무대지원시설의 환기개선 사업 진행 (권장)
			(관객/시설/방역) - 방역관련 업체 연락처 및 지방보건소담당자 확인 (권장) - 방역물품 재고 내역 최신화, 물품 상태 확인 (권장) - 공연장 내 공조시설 기본 운영방법 문서화 (권장) - 주기적 공조시설 필터 교체 확인 문서화 (권장) - 에어컨 (감염병 유행 시 운영방안) 관련 문서화 (권장)
			(비상대응 시나리오) - 사용 화학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아카이브 (산업안전지침) - 일반 보건 (CPR, 화학) 비상 시나리오 대응체계 (권장)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관 심 단 계 BLUE 위 기 단 계 시 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발생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공연장 내 해당 감염병 위험관리 준비	(공통) - 대관공연의 유형별 위험성 예측 및 평가지원 (권장) - 공연자 감염병 전파 위험요소 및 위험성 평가 갱신 (권장) - 위험성 저감 행동 및 재평가 (권장) -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정보 공유 (권장)
			(기획) - [예방 단계]의 내용 적용 - 보건관리자 지정 문서화 (보건 지침) - 감염병 방역 방식에 대한 대관단체 사전 협의 (권장) - 공조시설 운영변경으로 대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대의 소음 증가 및 풍향으로 인한 무대 영향력 사전 협의 (권장) - 직원 사무실 감염병 대응 툴박스 미팅 운영 (권장) - 직원 사무실 환기 순번 실시, 관련대장 작성 (권장) - 타 공연 제작에 동시에 참여 중인 공연자, 스태프 확인, 해당 대관공연단체 및 기획사와 확인 (권장, 장기공연일 경우 지자체 지침 참조) - 감염병의 방문 검사지원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인 (권장, 장기공연일 경우 지자체 지침 참조) - 지역 공연장 관리자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감염병 전파 원리 및 방역에 대한 신뢰 가능한 정보 파악 및 방역 방법 전파, 방역 노하우 및 관련 정보 공유) (권장) - 안전보건회의 회의 정례화, 회의 내용 공유 (권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3C 체계 점검 (권장)
			(무대) - [예방 단계]의 내용 적용 - 제조사 등을 통한 마스크 등 무대시설 방역방법 조사 및 내부 워크샵을 통한 공유 (필수, 가능한 경우 지역 공연장들과도 공유 권장)[9] - 공연장 무대직원 및 외부제작인력을 포함하는 무대 부분 보건 관련 툴박스 미팅 운영 (권장) - 무대 스태프의 흡연 및 휴식공간을 포함한 거리두기 픽토그램 디자인 (권장)[10] - 감염병 전파 지역 및 감염방식에 따른 외부인 방문 미팅/워크샵, 국내 및 해외출장/직원 개인휴가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유사시 문체부 및 소극장 협회 등의 지침 참조)[11] - 공연제작 스태프 혹은 공연자의 경우 다수 공연 혹은 방송에 참여 중인 인력 확인 (권장)[12] - 유사시 비대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무대 네트워크 인프라 시설 점검 (권장) -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 안내 또는 공연자 안전교육 (소극장 협회 및 유관 기관의 지침 참조)
			(관객/시설/방역) - [예방 단계]의 내용 적용 - 단계 상승 시 대관업체 관객수용 사전 협의(권장) - 관객 사전자가점검 요청 고지, 디자인 템플레이트 준비 (권장) - 감염병으로 인한 공연취소/연기 메시지 템플레이트 준비 (권장) - 물품보관소/티켓부스 등 대면서비스 위험감소 계획 실행 (권장) - 상주 인원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 수립 (권장) - 건물 내 공동 이용 시설 동선 분리 계획 수립 (권장))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관심 단계 BLUE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발생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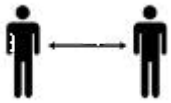 공연장 내 해당 감염병 위험관리 준비	- 열감지카메라 및 온도측정시설 등의 물품 재고점검 (권장) - 흡연 구역 및 식사구역 재지정 (권장) - 의심 환자 발생 시 임시대기소 지정, 관련 방역물품 준비 (권장) - 관객 출입 시 자가문진표 작성 배치 (권장) - 적정 전자출입명부 테스트 및 운영계획 수립 (권장) - 공연장 내 감염병 관련 안내문 디자인 (권장) - 일부 단기 방역물품 구입 (권장) - 장기 방역물품 구매 계획 (권장) - 열감지카메라/온도측정 시설에 대한 워크샵 실시 (권장) - 출입관리 인원의 자가보건관리 훈련 실시 (권장) (비상대응 시나리오) - 객석 및 공연장 밀도 감소 지침에 대비한 단계별 객석 레이아웃 제작 (권장) - 직원 유증상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계획 (권장) - 대관단체 유증상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계획 (권장) - 관객 유증상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계획 (권장) - 비상시 재택근무 공동 플랫폼 점검 (권장) - 유증상 의심 직원 임시대기소 지정 (권장)
주의 단계 YELLOW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제한적 전파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해당 감염병 위험성평가 갱신 업무방식 변화	(공통) - 갱신된 감염병 전파 방식/방역 방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위험성 평가 위험목록 갱신 및 평가 실시 (권장) - 해당 감염병 전파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직원별 현장필수직, 순차 재택근무직에 대한 사전 분류 시작 (권장) -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연장 인프라 확인 ((권장) - 공연별 위험성 저감 행동 및 재평가 시작 (권장) - 관련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정보 공유 (권장) (기획) - [관심 단계]의 내용 적용 - 국내/해외출장 단계적 제한 적용 (권장) - 외부인원 방문 회의에 대한 단계적 제한 적용 (권장) - 업무 시작 전 보건 툴박스미팅 진행 (권장) - 비대면업무 가능 인력 확인 (권장) - 대관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한 공연제작에 대한 인원 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 (권장) - 사무실 환기 순번제 실시, 기록 (권장) - 외부인 방문 미팅 자제, 온라인 미팅 전환 (권장) - 감염병 발생 지역 및 인근지역 출장 자제 요청 (권장) - 감염병 발생 해외지역 출장 계획 변경 (권장) (무대) - [관심 단계]의 내용 적용 - 역학조사를 위한 스태프 방문지역 정보 수집 (권장) - 대관단체별 무대의 방역물품 공동사용 방식 협의 (권장) - 무대장비 방역 실행 및 관련 내용 기록/문서화 (마이크 및 콘솔 등 공연자가 피부에 닿는 장비 위주) (권장) - 무대작업 툴박스미팅 실시(방역물품 및 거리두기) (필수) - 무대 보건 위험성 평가 및 저감조치 갱신 (권장) - 공연자/스태프 식사 공간 지침 준수 모니터링 (필수) - 설치/철거 시 휴식 및 흡연 거리두기 모니터링 (필수)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주 의 단 계 YELL OW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제한적 전파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해당 감염병 위험성평가 갱신 업무방식 변화	필요한 경우 휴식 및 흡연 관련 픽토그램 배치 (권장) - 분장실에서 개인물품(수건 등) 사용 지침 전달 (필수) - 분장실 거리두기 또는 별도 공간 분장실 사용 (필수, 민간 공연장은 비용 발생으로 사전 협의 필요) - 대관단체 협의 내용에 따른 무대의 환기/공조시설 단계적 적용, 발생하는 소음/온도변화/흑막 움직임 등의 이슈에 대해 대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 (필수) - 무대 반입/반출 및 리허설 전후 방역 실시 (필수)
			(관객/시설/방역/시나리오) - [관심 단계]의 내용 적용 - 공연장내 관객 출입 동선 분리 및 바닥 표기 (필수) - 당일 공연장 수용인원 게재 (필수) - 관할 지자체/문체부 식음료 제한 지침 고시 (필수) - 전시 등의 공연 외 행사 사전예약제 알림 (필수)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고위험 밀집공간에 대한 수용인원 알림 (필수) - 공조시설 및 에어컨 사용 방침 변경에 따른 소음/온도변화에 따른 관객 알림게시 (필수) - 관객 공간의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회의 안건 논의 및 해당 대관단체와 개선 방향 협의 (필수) - 매표소와 물품보관소에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방침 알림 (필수) - 공연장 정기적 환기 스케줄 마련 및 시행 일지 기록 (필수) - 관객 대기 공간 저밀도 방안 마련 (필수) - 신입/임시 안내원 방역 및 개인보호장비 교육 (필수) - 관객 서비스 지역에 접촉 및 비말 차단 아크릴판 설치 (필수) - 분장실 앞에서 관객과의 만남 제한 (필수) - 홈페이지 및 예매사이트 방역 대응 관련 관객 고지(필수) -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스템 운영 (필수) - 감염병 전파 관련 대응 요령 안내멘트 송출 (권장) - 장기적 보건 PPE, 방역물품 장기적 구매 계획 수립 (권장) - 인근 공연장 정보 공유를 통한 적정 전문방역업체의 선정 및 적정 비용조사 (권장) - 공연장 내 공공 용도시설(화장실 등) 사용 제한 (권장)
			(비상대응 시나리오) - 관객 중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 점검 (필수) - 유증상 직원 발생 시 대응 절차 점검 (필수) - 공연장 임시 폐쇄 대비 원격근무 점검 (권장)
경계 단계 ORAN GE	국내 원인불명 제출현 감염병의 지역 전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 전파	 공연제작/관객 공간/업무 저밀도화 시작	(공통) - 위험성 평가 위험목록 갱신 및 평가실시 (필수/계속) - 유증상자 추적 및 공연장 회복을 위한 공연단체 협력 강화 (필수) - 단계별 현장필수직, 순차 재택근무직 운영 (지침) - 근무/제작 환경의 저밀도화 시작 (지침) - 관람 환경 저밀도화 시작 (필수) -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연장 인프라 관리 (지침) - 공연별 위험성 저감 행동 및 재평가 강화 (필수) -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정보 공유 (필수)
			(기획) - [주의 단계]의 내용 적용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경계 단계 ORANGE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 전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 전파	 공연제작/관객 공간/업무 저밀도화 시작	- 공연장 입주시설 동선 분리 (필수) - 필수 현장 근무 외 재택근무 순차적용 (권장) - 대관단체별 공연 제작 및 공연 전/후 면대면 대외활동에 대한 자제 요청 (권장) - 대관단체별 인터미션, 관객진입, 공조시설 등의 감염병 전파 관련 내용 사전 협의 ((지침)
			(무대) - [주의 단계]의 내용 적용 - 무대 스태프 발열체크 주기 강화 (지침) - 흡연 및 식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지침) - 접촉 가능한 무대시설에 대한 소독 주기 강화 (지침) - 공연/리허설/반입출 전후 무대지원공간 방역 강화 (지침) - 지하 및 공조시설이 없는 조정실, 조명실 등의 무대지원시설 환기강화 및 환기 상태 기록 (지침) - 무대 파트 위험성 평가 강화 (권장) - 툴박스 미팅 운영 강화 및 모니터링 (권장) - 무대시설 공조시설 외부공기 비율 강화 (권장)
			(관객/시설/방역/) - [주의단계]의 내용 적용 -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및 사전 고지 갱신 (필수) - 관객 그룹별 분산 퇴장 등 구체적 관객 입퇴장 시 저밀도 유지 계획 적용 (필수) - 관객의 환호, 노래부리기, 음료 섭취에 대한 방역지침을 로비 및 객석 공간에 고지 (필수) - 공조시설 외부공기 사용 강화 (권장) - 객석 팔걸이, 등받이 파트 등 고위험 부분 추가소독 (권장)
			(비상대응 시나리오) - [주의단계]의 내용 적용 - 유증상 발생 시 관련 감염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SNS 카드 템플레이트등 사전 작성 (필수) - 공연장 출입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 확인 및 유증상 환자 추적을 위한 데이터화 (권장, 개인정보 허용 기간 준수) - 동시에 타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공연자, 스태프 활동 파악 및 유증상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 (권장)
심각 단계 RED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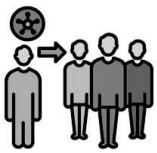 장기 유행대비 탄력적 공연장 운영 적극적 감염병 전파 추적 지원 공연 및 지역 커뮤니티 데미지 최소화	(공통) - 위험성 평가 위험목록 갱신 및 평가실시 (필수/계속) - 장기 유행에 대비한 방역물자 요청 주기 강화 - 장기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도에 대한 내부직원 상담 (필수) - 장기 유행으로 인한 공연 프로그램 장기 조정 (지침) -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에 따른 탄력적 저밀도화 적용 (지침) - 유증상자 추적 및 공연장 업무 회복을 위한 공연단체 협력 강화 및 대응 시나리오 현실화 (필수)
			(기획) - [경계단계]의 내용 적용 - 정부 방역 지침 변화에 따른 조정내용을 지속적으로 대관단체들과 협의 (권장) - 대관 예정인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 저감을 위해 대관단체와 비대면미팅 실시, 공연 자체에 대한 감염병 위험 저감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권장)

국가위기 경보단계	감염병 관련 판단기준	공연장 대응 방향	(해당 직원 - 기획/무대/관객/시설/대응) - 직원별 세부 대응 (권장/필수)
심각 단계 RED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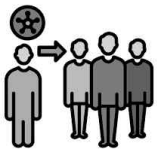 장기 유행대비 탄력적 공연장 운영 적극적 감염병 전파 추적 지원 공연 및 지역 커뮤니티 데미지 최소화	(무대) - [경계단계]의 내용 적용 - 무대 제작 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목록 적용 및 저감 방안 논의 후 저감 대책 시행 (권장) - 공연 제작 시 발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PPE 착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 대관단체 협조요청 (안전보건회의 동시 보고, 권장) (관객/시설/방역/시나리오) - [경계단계]의 내용 적용 - 관객지원 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목록 적용 및 저감 방안 논의 후 저감 대책 시행 (권장) - 관객지원 스태프의 사회적 거리두기, PPE 착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 관객관리에 대한 대관단체 협조요청 (안전보건회의 동시 보고, 권장) - 예매 티켓 환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원사항 지원 (권장) (비상대응 시나리오) - [주의단계]의 내용 적용 - 유증상 관객보고 접수 시 밀접접촉 여부 추적 시나리오 설정 및 테스트 (지자체 방침)
복구 위기 단계 아님	유행 종료	 해당 감염병 노하우 문서화 기존 방역물품 관리	(공통) - 전염병 방역에 대한 직원별 토론 참여 (권장) - 추가적인 보건 훈련과 교육 필요성 논의 (권장) - 매뉴얼 관련 전염병 부분 업데이트 (권장) - 해당 물품 목록 문서화 (권장) - 백신접종자/미접종자에 대한 공연관람 관람 방침 검토 (권장) (시설) - 장기 보관을 위한 방역물품 유통기한 확인 및 저장 (필수) - 수리 필요한 방역시설의 수리 의뢰 (필수) - 방역 관련 문서에 대한 정리 (필수) - 방역물품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필수)

8)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보건교육 플랫폼을 활용 할 수 있음
9) 제조사에서 방역 방식에 대해 별도의 알림을 하는 경우가 제한적이므로 유사기능제품을 감안
10) COVID-19 전파사례, 무대제작 중 휴식 및 흡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하지 않게 운영된 경우 참조
11) 2020년 2월 모 공연장 소속 예술단체 타 지역 방문 뒤 해외출장 사례 참고
12) 2021년 4월 23일 뮤지컬공연 4개 공연에 전파 사례 참조

제 3 장 부 록

1-1 [법정 감염병 종류와 분류]

(법정 감염병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을 통해 공연장에 유입 가능한 감염병은 아래와 같다.

---

(1)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정부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2)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정부에서 국가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3) 기타 위기 유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국가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상시 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 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경우 등

(법정 감염병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을 통해 공연장에 유입 세부적인 감염병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 법정 감염병은 4개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87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 87종 중 전수감시 대상 64종, 표본감시 대상 23종이다.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6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13) 2021년 기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4) 2021년 기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6종)	4급 (23종)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러. 코로나감염증 (COVID-19)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및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1-2 [국내 관계 법령]

가.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나. 관련 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검역법

(5) 의료법

(6) 결핵예방법

다. 관련 규정 및 지침

(1) 메르스 대응지침

(2) 사스(SARS) 관리지침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4)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5)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6)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7)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8)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및 학생 감염병 매뉴얼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행정안전부)

(10)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3 [관련 국제 보건 및 감염병 표준]

가. 세계보건기구 WHO 감염병 군중 관리 가이드라인

나. ISO 31000 국제표준 위험성평가기준

다. ISO 45001 국제표준 안전보건관리기준

라. 국제이벤트안전협회(ESA) 재개장에 따른 보건 가이드라인

마. 영국극장기술자협회(ABTT) 공연장 보건 위험성평가 (Note101)

1-4 [관련 용어 정리]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위기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함. 위기상황의 유형을 위기경보 발령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
결과수습형	위기상황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발생한 유형으로, 재난의 전조가 없어 「관심」단계 불필요. 바로 「심각」단계 발령
완만진행형	위기상황의 심각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유형으로, 「관심」부터 「심각」까지 순차적 또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
순간증폭형	초기 피해는 경미했지만,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귀결되는 유형으로 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한 폭발점 확인 및 「심각」단계 발령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난관리단계	①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파트너	공연제작 및 시설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공연장 외부의 공연기술 및 디자인 단체 및 시설관리를 위한 지원 회사들을 포함하며, 산업안전 차원의 차원에서는 협력업체로 해석할 수 있다.
감염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용 어	정 의
	통칭함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수단으로 공항, 항만, 육로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
방역물자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통칭함
제한적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의료기관, 학교, 직장, 집단 시설 등)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확산	전파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프리랜서	단체로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무대 디자이너 (세트, 의상, 조명, 영상, 음향) 및 무대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 혹은 공연자 혹은 출연자 등의 외부인력으로서 프리랜서의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대관단체 혹은 기획사와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건 부분에서 고위험에 노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파트너 (협력업체/단체)	공연제작을 위해 참여하는 업체 혹은 단체로서, 공연기획사 혹은 공연장 대관을 하는 제작업체에 고용되는 형태로 공연장에 참여한다. 공연제작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보다는 산업안전보건상 사업자의 의무와 위험성평가가 적용되는 최소단위로 산업안전보건에서 협력업체로 인식된다.
사례 클러스터	WHO 감염병 군중 관리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지역집단 전파 사례를 말한다.
CPR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툴박스 미팅	산업보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본 매뉴얼에서는 공연장에서의 업무시작 이전에 예정 된 업무와 절차, 안전보건 유의점 확인 등에 대하여 스태프 및 공연자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함을 둘러싸고 협의한다고 해서 본 명칭이 사용되었다.

용 어	정 의
KF지수	보건용 마스크의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에 대한 차단율이 높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정도인 ‘분진포집효율’,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인 ‘누설률’ 등을 시험한 결과에 따라 숫자를 붙인다. KF지수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은 먼지 차단율이 높지만, 차단율이 높으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호흡량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천식이나 비염 환자, 심장질환 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 후에 마스크를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 등급으로는 'KF80', 'KF94', 'KF99' 등이 있다.
소공연장	공연법으로 객석 수 300석 미만의 공연장이다.

1-5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체계 및 전파 절차]

□ (위기형태) 감염병의 위기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 기타 위기 유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건복지부 대응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 재난상황에 따라 대책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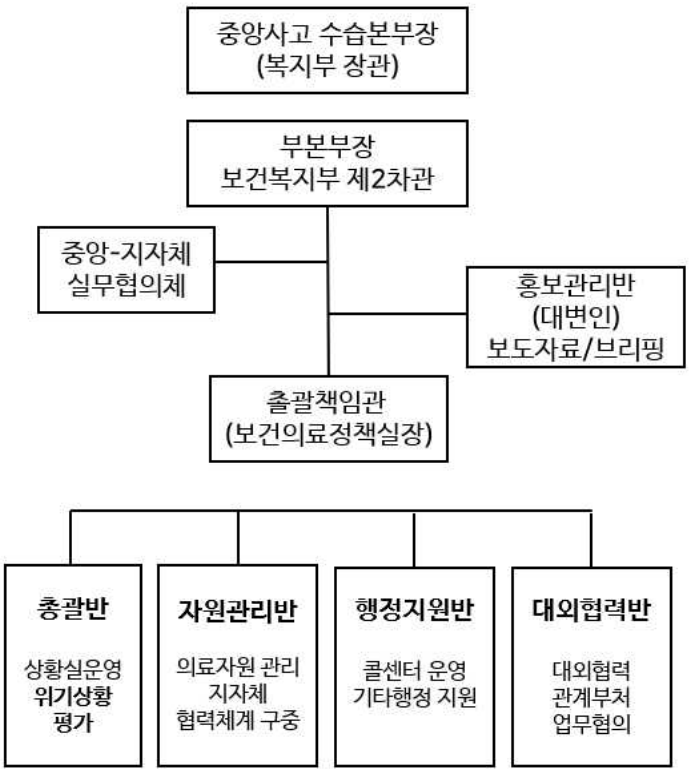

그림 51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대응체계

□ (보건복지부 비상단계) 위기유형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경우 비상단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과 질병관리청장이 위기평가회의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단계를 숙지한다.

- (관심) 사전 대비단계
- (주의)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대책본부) 대응 단계
-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 단계
- (심각) 범정부 총력 대응 단계

□ (보건복지부 경보원칙)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감염병 재난은 감염병의 종류, 유입 및 발생 상황, 대응 역량 등에 따라 전개 속도나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라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관심-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15)]

15) 단, 경계 단계이상 상향시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1-6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경보 발령 체계 및 전파 절차]

□ (취지 및 주요 사항) 본 체계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기대응 최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나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 많은 변수가 있음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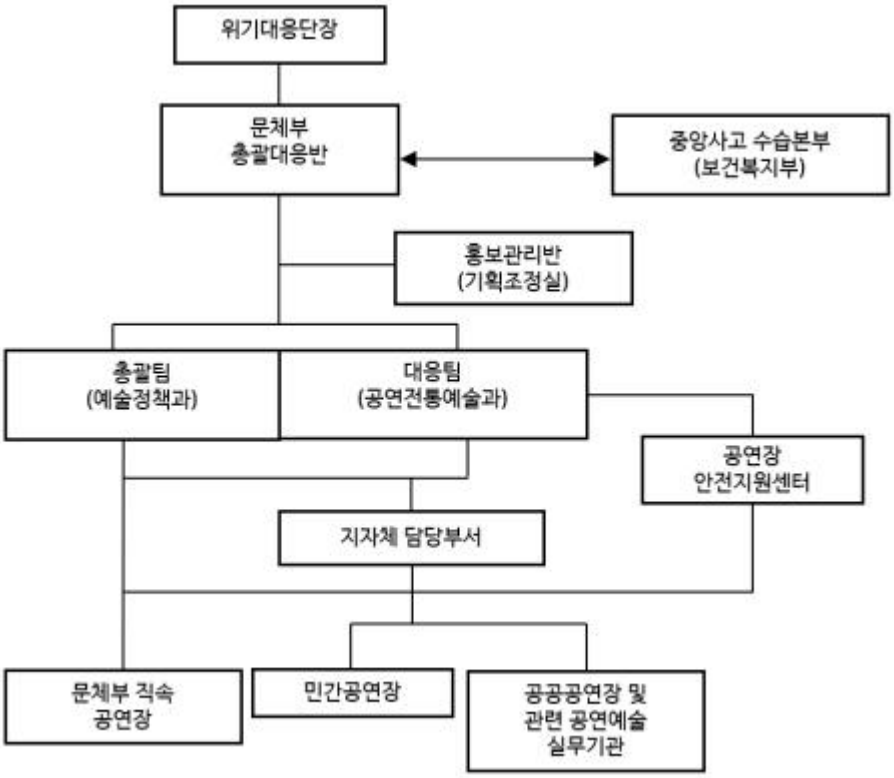

[그림 52]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전파 및 위기대응 체계도

□ (위기대응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및 공공공연장과 소통한다.[16)]

□ (총괄팀 업무) 총괄팀은 예술정책과에서 맡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위기관리 총괄
- 위기 상황에 따른 대책 수립·실시총괄
- 피해 지원방안 마련/실시
- 관련 예산 검토/확보
- 기타 현황 파악 및 상황 보고

16) 체계도는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공연장)」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감염병 재난상황에 따라 대책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린다.

□ (대응팀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업무) 대응팀은 공연예술전통과에서 맡고 있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 등 대책마련
  (산하기관 및 공연장 운영제한 방안, 지자체 협력 방안 등)
- 위기정보 수집/배포 (외부)
- 공연업계(관련단체, 공연장 및 종사자) 소통채널 운영
- 공연장 동향 및 일일상황 파악
- 유관기관/ 실무기관 협조체제 유지
- 자체 관련 안전지침 등 작성 · 배포
- 공연장 방역 및 관련물품 지원 대책 마련

□ (관리/홍보반) 관리홍보반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전파
- 감염병 관련 타 부처 정보 및 협조사항 접수·전파
- 유관 부처/ 문체부 직원 간 내부 협조 체제유지
- 접수된 사항 부처 내 배포
- 재난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브리핑

□ (지자체) 지자체는 「공연장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방역지원 등)이 수록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은 해당 지자체인 시도 혹은 지역구의 방역직원과 함께 문체부의 지침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17]. 아래의 직원을 통해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

17) 지역정부 직할로 운영되는 문예회관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문예회관들이 문체부의 공연예술펀드를 받아 운영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연 등에 대한 연기 혹은 진행에 대한 지침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문예회관의 경우 방역 지침 전달 체계에 따라 지역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보다 문체부의 지침이 2~3일 후에 전달되는 경우 있어 지침 전달 속도에 대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2020년 7월 기준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_____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 http://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30000&bid=0020&act=view&list_no=367789, 질병관리청

신고방법

1.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린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감염병환자 중 확진검사결과 또는 환자 등 분류정보가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4.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을 통해 신고합니다.
7. 관할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작성방법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과 보호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하며,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 등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팩스 송신일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입력일을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환자 등 분류: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 란에 √표를 합니다.
(6)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 란에 √표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등]

(1)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의료기관장의 성명을 적고, 신고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 · 전화번호와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및 소속기관장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기관장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보고정보]

(1)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 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2-2 수기명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 시설관리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시설명) 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 늘	
6.24	17:24	√	관악구		

2-3 수기명부 명부 안내서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20.6)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되,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비치되는 **수기명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수기명부 지침 배포

* 성명은 미 기재,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1.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서식 1]

-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특히,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관리자·운영자)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2. 법적 근거

○ 수기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기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3-1 [공연장 순환근무공간 보건관련 체크리스트 예시 (무대)] COVID-19

<table>
<tr><td rowspan="2">음향</td><td>마이크</td><td rowspan="8">기타

필요한 경우 개인 위생 커버 및 마이크 사용

관련 제조사 및 시스템 관리 방식에 반하지 않는 방식에서 소독 처리

(감염병 단계별 추가 가능)</td></tr>
<tr><td>☐ 마이크 내부 스펀지 소독 여부
☐ 마이크 손잡이 소독 여부
☐ 핀 마이크 소독 여부
☐ 음향 벨트팩 소독 여부
☐ (감염병 단계별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6">공통</td><td>무대 영상/음향/기계 콘솔 및 제어관련</td></tr>
<tr><td>☐ 터치 패널 표면 부분 소독
☐ Knob(노브) 및 페이더 표면 부분 소독
☐ 제어 PC 마우스 및 키보드 표면 부분 소독
☐ (감염병 단계별 추가 가능)</td></tr>
<tr><td>인터컴</td></tr>
<tr><td>☐ 헤드셋 부분 소독
☐ 마스터 스테이션 및 벨트팩 부분 소독
☐ (감염병 단계별 추가 가능)</td></tr>
<tr><td>기타</td></tr>
<tr><td>☐ 팔걸이 및 조정실 책상 표면 소독
☐ 개인물품 (일회용 커피잔 등)의 처리 확인
☐ 제어실 내부 환기
☐ (감염병 단계별 추가 가능)</td></tr>
</table>

3-2 [방역 업체 소독증명서 혹은 소독필증 양식] COVID-19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 독 증 명 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 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소독방식 기재)	
	약품 사용 내용	(약제와 약제 사용량을 기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 (인)

3-3 소독실시대장 양식] 공연장 보관용

본 소독실시대장 양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설명과 소재지는 고정되어 있어 앞의 컬럼으로 이동하였으며 관객과 대관 단체를 위해 별도로 환기시간 등이 추가되었음을 알린다.

소 독 실 시 대 장 (공연장)

시설명 : oo 소극장

소재지 : 경기도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 주체 담당자	소독의 종 류	사 용 약품명	사용량	환기시간
21-1	2021. 01.01	소독업체 혹은 공연장 자체적 수행	관객 관람 후 공연장 정규소독	MD-125 환경부허가 살균소독제 (예시)	5L (예시)	20분

3-4 [감염병 예방 개인보호장비 계획 예시] COVID-19

2020.12 일자 기준 , COVID-19 심각단계

고위험업무	관련 위험성	관련 개인보호장비 및 추가조치
관객 체온측정 지원 스태프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높음 관객 접촉 빈도수 높음	KF94 마스크[19],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물품보관소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높음 관객 접촉 빈도수 높음	KF94 마스크,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매표소		KF94 마스크,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현장 발권의 제한
보안직원	일반 시민과 접촉 빈도 높음	KF94 마스크,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방문기록의 온라인화를 통해 접촉 빈도를 줄일 수 있음
공연장 F&B	일반 시민과 접촉 빈도 높음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높음	마스크, 장갑, 소독제 주문/테이크아웃 경로 분리
기념품 직원	해당 없음[20] 일반 시민과 접촉 빈도 높음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높음	.마스크, 장갑, 소독제 주문/테이크아웃 경로 분리
무대감독	장비를 통한 간접 접촉 업무별 접촉기회 높음	KF80 마스크,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하우스매니저 및 관객안내원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높음 관객 접촉 빈도수 높음	KF94 마스크, 장갑, 소독제 아크릴 비말 스크린
임시 안내직원	(업무에 따라)일반 시민 또는 관객 비말 전달가능성 있음	일반적으로 임시 직원들의 경우 감염병 감염 방역에 더 취약할 수 있음

19) 직원별 KF94로 인해 호흡이 불편한 경우 등급을 줄여서 적용

20)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기념품샵이 없으나 극장 대관과 관련되어 프로덕션의 홍보직원이나 관객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직원들로 볼 수 있다.

3-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수칙] 2021년 4월 적용 갱신 내용

□ (배경)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과태료)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table>
<tr><th>기본방역수칙</th><th>세부 수칙 구분</th><th colspan="2">관련 원칙</th></tr>
<tr><td rowspan="2">개인방역수칙</td><td>기본수칙</td><td colspan="2">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지인은 비대면 만나기(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 제외)</td></tr>
<tr><td>상황별
방역수칙</td><td colspan="2">근무(증상 시 퇴근, 재택/유연근무/영상회의 용, 상시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사용 금지)
식(간단한 식사, 지그재그, 한 방향, 한 칸 띄우기, 포장 배달 활용, 개인접시 사용)
운동(마스크, 개인 용품 사용, 전후 모임 음식 섭취 X)
공동(1인1실 권장, 정해진 공간 외 취식금지, 관련 표면 정기 소독)</td></tr>
<tr><td rowspan="3">시설방역수칙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 시설별 수칙 우선 적용

이용가능 인원 및 공통방역수칙/ 추가수칙 게시</td><td>공통수칙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td><td colspan="2">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명부 작성(모두 적용)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21]
밀집도 완화 (2m 이상, 최소 1m)[22]
환기[23]
소독[24]
방역관리자 지정</td></tr>
<tr><td rowspan="3">시설별
추가수칙[25]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td><td>중점 관리시설
6.
실내스탠딩공연장</td><td>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공용공간은 ‘시설 공용공간 수칙’ 적용
대중음악 등 관람 시
- 침방울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td></tr>
<tr><td>일반관리시설
5.
영화관 공연장</td></tr>
<tr><td>기타시설
6.
전시관 미술관</td><td>부대시설 이용
-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td></tr>
</table>

21)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22) 미술관 및 박물관의 경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및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예약시스템 미설치 시 출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3)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 환기 횟수 증가

24) 1일 1회 이상 소독, 소독대장 작성,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 사업장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건 등 소독

25)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확대 대상

3-6 [코로나19 심폐소생술 권고안 지침[26]] 대한응급의학회

일반인에게는 흉부압박만 실시, 병원 내 전기제세동 시 패드 사용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율 8.7%, 심폐소생술로 생존율을 2~3배 이상 증가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서의 병원 밖 일반인 심폐소생술 권고안

1. 감염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장갑, 마스크, 고글 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착용하고 조치를 취한다.
2. 일반인 구조자는 인공호흡으로 인한 감염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흉부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현재의 소생술 지침에 따라 호흡여부와 반응유무로 심폐소생술 필요여부를 결정하며, 호흡확인을 위해 환자의 입에 구조자의 얼굴을 근접하는 것은 피한다.
3. 환자나 구조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사실을 119구급대에 알린다.
4.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한 후 손을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는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서의 병원 내 심폐소생술 권고안

1. 병원 내 심폐소생술은 개방된 환경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가능한 경우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전실이 있는 음압시설의 경우 직접 소생술을 실시하는 인력 이외 나머지 인력은 전실에서 보조한다. 전실이 없는 경우는 소생술이 이뤄지는 공간 내에 전실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2. 소생술에 참여하는 구조자는 감염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최소 D등급의 전신보호복이나 방수성 긴팔가운, 글러브 및 고글(혹은 안면쉴드)과 함께 최소 N95(가능하면 cup-type보다는 fold-type)나 FFP3 이상의 마스크 혹은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를 착용한다.

3. 인공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무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

백밸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환기동안 마스크가 환자의 안면에 확실하게 밀착되도록 한다.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비디오후두경을 이용해 실시한다. 백밸브마스크, 성문위기도기, 기관삽관튜브를 통해 양압환기를 하는 경우 마스크 혹은 튜브와 백 사이에 헤파필터(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를 거치한다.

26) 대한응급의학회 뉴스레터 2020.03

4. 소생술동안 감염에의 노출 및 노출 인력을 줄이기 위해 다음을 고려한다.

사용가능한 경우 흉부압박은 기계흉부압박장치를, 전기제세동은 패드를 사용해 실시한다.

5. 소생술 종료 후 기관의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고, 소생술에 참여한 구조자는 손을 충분히 씻는다. 제조사 및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심폐소생술동안 사용한 도구 및 장비들을 세척 혹은 폐기한다.